



제 426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등급규격 외 지역농산물에 대한 지원 〉

■ 문진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564호)

2025. 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 용 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등급규격 외 지역농산물에 대한 지원	2
가. 관계기관 의견	3
나. 검토의견	5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등급규격	5
2) 검토의견	8
2. 부칙	12
가.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12
나. 검토의견	1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문진석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5. 4. 3.

3. 회 부 일 : 2025. 4.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크기, 모양, 색깔이 균일하지 않거나 자연재해로 인해 외관상 손상이 발생한 농산물의 소비·유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러한 농산물은 품질과 영양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품성이 낮다는 이유로 시장에서 외면받거나 폐기되는 경우가 많아, 농업인의 소득 감소와 농산물 자원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농산물에 대한 소비촉진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농업재해나 그 밖의 사유로 등급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농산물에 대해서 소비촉진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농산물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소비자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등급규격 외 지역농산물에 대한 지원

개정안은 농업재해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등급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농산물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소비촉진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5조의2(등급규격 외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및 유통 활성화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하여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재해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등급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농산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농산물에 대하여 소비촉진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유통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가. 관계기관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나 그 밖의 사유로 품질이 저하된 농산물에 대하여 소비촉진과 유통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동의함.

다만, 품질이 저하된 농산물에 대한 규모가 불분명하고, 강행 규정 신설에 따라 재정 운용이 경직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임의 규정 (“지원을 할 수 있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는 등급규격을 일부 농산물에 대하여만 정하고 있는바, 등급규격에 포함되지 않는 농산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2) 산림청

현행법의 정의상 지역농산물¹⁾에는 임산물도 포함되므로, 지원주체에 산림청장이 추가될 필요가 있음.

1)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2. “지역농산물”이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생산·가공된 농산물로서 해당 지역에서 유통·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 관련 규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기획재정부

등급규격 외 지역농산물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은 재정 운용이 경직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수용이 곤란함.

한편, 현행법은 국가가 종합 시책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행하도록 하여,²⁾ 지역농산물 관련 시책을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정하는데,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지원주체에 포함하고 있어, 현행 체계와 차이가 있어 보임.

2)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농업인과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농산물의 유통단계 축소 및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종합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나. 검토의견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등급규격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는 농산물(축산물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과 수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유통 능률을 향상시키는 등의 목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산물과 수산물에 대하여 표준규격(포장규격·등급규격)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또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의하여 표준규격 제정·개정·폐지권한이 위임됨.³⁾

구체적으로는 ① 임산물을 제외한 농산물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농관원장”이라 한다), ② 임산물은 산림청장, ③ 수산물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되어 이들이 각각 표준규격을 정함.⁴⁾

농산물의 표준규격 중 등급규격은 현재 ① 임산물을 제외한 농산물의 경우 총 82개 품목, ② 임산물의 경우 총 36개 품목이 각각 농관원장과 산림청장에 의하여 제정되어 있음.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5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42조(권한의 위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임산물은 제외한다)의 표준규격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중 임산물 및 그 가공품에 관한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표준규격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표준규격의 제정·개정 및 폐지

【 등급규격이 제정된 82개 농산물(임산물 제외) 현황 】

연번	구분	품목수	세부품목
1	과실류	11	① 사과, ② 배, ③ 복숭아, ④ 포도, ⑤ 감귤, ⑥ 금감, ⑦ 매실, ⑧ 단감, ⑨ 자두, ⑩ 참다래, ⑪ 블루베리
2	채소류	25	① 마른고추, ② 고추, ③ 오이, ④ 호박, ⑤ 단호박, ⑥ 미니단호박, ⑦ 가지, ⑧ 토마토, ⑨ 방울토마토, ⑩ 송이토마토, ⑪ 참외, ⑫ 딸기, ⑬ 수박, ⑭ 조롱수박, ⑮ 멜론, ⑯ 피망, ⑰ 파프리카, ⑱ 양파, ⑲ 마늘, ⑳ 무, ㉑ 결구배추, ㉒ 양배추, ㉓ 당근, ㉔ 브로콜리, ㉕ 비트
3	서류	2	① 감자, ② 고구마
4	특작류	5	① 참깨, ② 피땅콩, ③ 알땅콩, ④ 들깨, ⑤ 수삼
5	버섯류	5	① 느타리버섯, ② 큰느타리버섯(새송이버섯), ③ 양송이버섯, ④ 팽이버섯, ⑤ 영지버섯
6	곡류	14	① 쌀, ② 찰쌀, ③ 현미, ④ 보리쌀, ⑤ 좁쌀, ⑥ 울무쌀, ⑦ 콩, ⑧ 팥, ⑨ 녹두, ⑩ 찰수수쌀, ⑪ 찰기장쌀, ⑫ 메밀, ⑬ 옥수수(팝콘용), ⑭ 옥수수쌀
7	화훼류	20	① 국화, ② 카네이션, ③ 장미, ④ 백합, ⑤ 글라디올러스, ⑥ 튜울립, ⑦ 거베라, ⑧ 아이리스, ⑨ 프리지아, ⑩ 금어초, ⑪ 스타티스, ⑫ 칼라, ⑬ 리시안시스, ⑭ 안개꽃, ⑮ 스토크, ⑯ 공작초, ⑰ 알스트로메리아, ⑱ 포인세티아, ⑲ 칼랑코에, ⑳ 시클라멘
총계		82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식생활소비정책과, 2025. 5. 15.

【 등급규격이 제정된 36개 임산물 현황 】

연번	구분	품목수	세부품목
1	수실류	13	① 밤, ② 건대추, ③ 생대추, ④ 뽕은 감(생감), ⑤ 홍시, ⑥ 꽃감, ⑦ 간잣, ⑧ 호두, ⑨ 은행, ⑩ 다래, ⑪ 복분자, ⑫ 산딸기, ⑬ 석류
2	버섯류	7	① 건표고, ② 생표고, ③ 송이, ④ 건꽃송이, ⑤ 생꽃송이, ⑥ 건목이, ⑦ 생목이
3	산나물류	10	① 건취나물, ② 생취나물, ③ 건고사리, ④ 생고사리, ⑤ 더덕, ⑥ 생도라지, ⑦ 두릅(삽수두릅, 잎두릅), ⑧ 죽순, ⑨ 건고려엉겅퀴(곤드레), ⑩ 생고려엉겅퀴(곤드레)
4	약용류	4	① 건오미자, ② 생오미자, ③ 건산수유, ④ 건구기자
5	약초류	1	① 산양삼
6	수목부산물류	1	① 수액
총계		36	-

자료: 산림청고시, 「임산물 표준규격」 [별표 5] 임산물의 종류별 등급규격

2) 검토의견

최근 기후위기에 따른 이상기후로 인하여 과수 등 농작물 피해가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등 농업 현장에서 어려움이 나타남.⁵⁾

예를 들어, 농림축산식품부의 2024년 재해대책비(1033-302) 사업의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주로 우박·대설·한파·호우·일조량 부족·냉해·폭염 등 다양한 기후현상에 따라 집행되었음을 알 수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재해대책비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연번	구분	집행액	세부집행내역		
			연번	집행사유	집행액
1	사유시설	200,678	①	우박 ('23. 11.)	98
			②	대설·한파 ('23. 12.)	2,895
			③	대설·한파 ('24. 1.)	1,673
			④	호우 ('24. 2.)	1,390
			⑤	대설 ('24. 2.)	272
			⑥	일조량 부족	20,356
			⑦	냉해 ('24. 2.~3.)	3,205
			⑧	마늘 이차생장 및 양파 추대·분구	15,875
			⑨	호우·강풍·우박 ('24. 5.~7.)	4,935
			⑩	호우 ('24. 7.)	39,169
			⑪	폭염 ('24. 7.~9.)	9,780
			⑫	호우 ('24. 9.)	17,966
			⑬	이상기온 벼멸구 피해	12,779
			⑭	대설 ('24. 11.)	70,285

5) 농민신문, “터지고, 데고, 떨어지는 과일…밤낮없는 더위에 견딜 틈 없었다”, 2025. 5. 16., 2025. 5. 27. 확인, <https://www.nongmin.com/article/20250514500545>

연번	구분	집행액	세부집행내역		
			연번	집행사유	집행액
2	공공시설	65,644	①	호우·태풍 ('23. 6.~7. 미지급분)	48,887
			②	호우 ('24. 7.)	16,537
			③	호우 ('24. 9.)	220
계		266,322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사업설명자료(Ⅱ-1), 2025, p.788.

이러한 이상기후 현상 속에서, 농가에서는 품질규격 등에 적합한 농산물 외에 크기·형태·품질 등이 일부 저하된 이른바 “못난이 농산물” 또한 생산되고 있어, 그 처리·활용에 관한 문제가 대두됨.

개정안은 생산·가공된 지역 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지역농산물 중 농업재해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등급규격에 적합하지 않게 된 농산물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비 촉진 및 유통 활성화를 지원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개정안의 취지는 정책적 지원을 통하여 못난이 농산물의 소비·유통을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의 연속적인 이상기후 피해를 고려하면 필요한 측면이 있어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는 자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크게 세 가지 측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할 수 있음.

첫째, 개정안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등급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될 것을 지원대상의 기준으로 규정하는데, 「농수산물 품

「질관리법」이 등급규격 제정을 임의규정으로 함에 따라 등급규격이 마련되지 않은 농산물이 있음.

즉, 현재 농관원장(82개 품목)과 산림청장(36개 품목)에 의하여 등급규격이 마련된 118개 품목 외의 농산물의 경우,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지원대상 기준이 되는 등급규격 자체가 없어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못할 수 있음.

개정안은 품질이 저하된 못난이 농산물의 소비·유통을 지원하려는 것이므로, 지원대상을 “등급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품질이 저하된 농산물”과 같이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어 보임.

둘째, 현행법은 지역농산물 등에 대하여 다양한 지원을 규정하는데, 이들 지원규정은 대체로 “지원할 수 있다”의 임의규정 형식을 보임.

【 현행법상 주요 지원규정의 강행·임의규정 여부 】

연번	조	지원내용	강행·임의규정 여부
1	제9조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장 및 농산물직거래사업장의 설치 등 지원	임의규정
2	제13조	지역농산물의 공동구매, 계약재배 등 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에 대한 지원	임의규정
3	제1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의 지역농산물 우선구매	임의규정
4	제15조	지역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등의 지원	임의규정
5	제18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과 생산자 등의 상생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임의규정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작성, 2025. 6. 12.

그런데 개정안은 등급규격 외 지역농산물에 대한 지원을 강행규정 형태로 규정하려는 것이므로, 다른 지원규정과의 법률 내부적 정합성 측면을 고려하여 임의규정으로 실시하되, 추후 사업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의무규정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셋째, 「농산물직거래법」상 농산물에 임산물이 포함되는 점, 임산물에 대한 등급규격을 산림청장이 제정하는 점 등으로 인하여, 지원주체에 임산물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산림청장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다만, 산림청은 「정부조직법」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기관이고,⁶⁾ 현행법에서는 지역농산물의 범위에 임산물이 포함됨에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별도로 산림청장에게 의무나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산림청장이 임산물 등급규격 제정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나, 이는 본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부여된 권한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5조에 따라 위임받아 행사하는 것임을 참고할 수 있어 보임.

참고로, 현행 「농산물직거래법」 역시 제3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므로,⁷⁾ 필요한 경우 해당 규정을 활용할 수 있어 보임.

6) 「정부조직법」

제37조(농림축산식품부) ⑤ 산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산림청을 둔다.

⑥ 산림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7)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0조(권한 등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부칙

개정안은 부칙에서 이 법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부칙).

개 정 안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법률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려는 개정안을 수용함.

나. 검토의견

개정안은 안 제15조의2제2항에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따라서, 개정안을 수용함에 따라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하위법령의 마련이 요구되므로, 6개월의 준비기간을 부여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16